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07
----------	------

제출년월일 : 2018.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며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문변리사의 운영 근거를 추가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1조)
- 고문변호사 위촉 시 양성평등 사항을 반영하였음..... (안 제2조제1항)
-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을 신설하여 위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2조제5항)
- 자문수당 지급액을 150%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로 판시되므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지원 내용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삭제하고, 민사소송 피소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토록 신설함(안 제5조 및 별표 2)
- 중요소송 지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한액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그간 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기준 규정(안 별표 1)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9.8. ~ 2017.9.29.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3
 - 방침결정문 : 붙임4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7명 이내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性)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하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업무 등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지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 요청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는 등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 한다) 수행 중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비위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제3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3.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협약 등에 관한 자문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자문
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 제2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
2.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3. 계약서, 협약서 등의 자문 또는 시정 중요사안의 자문 등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과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 고발 등으로 형사입건 되어 각하, 죄가 안됨 결정 또는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공소제기 되어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상정은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안건의 상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및 자문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심의안건 상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요소송 또는 중요자문(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 등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 : 2천만 원 이하

2. 승소사례금 : 3천만 원 이하

3. 중요자문 : 3백만 원 이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자문 의뢰 또는 사건 선임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중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로 한다.

소관 실·과		예산법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전 덕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송무팀장 임 은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노 다 지 (행정 2830)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 사 소 송	신청 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	·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50	· 청구서
	본안 사건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 단, 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 완전승소 : 착수금의 100분의 150 · 60%이상 승소(화해의 성립, 조정결정의 취지가 60%이상 승소인 경우 포함) :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 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 (쌍방취하를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단,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는 지급제외)	1. 착수금 청구서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	상 동	상 동
행 정 소 송	신청 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본안 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환송심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청구시 구비서류
기 타 소 송 비 용	·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출장비 및 여비 : 「안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 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청구서 ·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 나.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 다. 시가 공동피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외의 피고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시의 결과가 결정되는 소송
- 라.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시점은 소제기시를 원칙으로 하되,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시를 산정시점으로 한다. 이때, 그 지급액은 소송기여도에 따라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기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서 구비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형사 소송	입건 이후 제1심까지	2,0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영수증 포함) · 결정문 · 사건확정증명원
	항소심	500만원 이하		
	상고심	500만원 이하		
	환송심	250만원 이하		
민사 소송	심급별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환송심	150만원 이하		

승 낙 서

본인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시의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기관명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위 축 장

범무법인 △△

대표변호사 ○○○

귀하를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년○○월○○부터 ○○년○○월○○까지 안산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법률고문위촉계약서

위임인(갑) : 안 산 시
대표자 시장 000

수임인(을)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000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갑이 자문 의뢰 또는 소송 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제공 등】 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수당】

- ① 갑은 을에게 자문수당으로서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 ② 자문수당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송비용 등】

- ① 갑이 을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1]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③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해지】 양 당사자는 조례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통지의무】

① 을은 수임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 또는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론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및 비용 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비용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수임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업무의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 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건수임】 을은 이 계약 체결 이후 갑 이외의 자 등에게 갑의 이익과 상충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의 촉탁 또는 갑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건 위임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 【소송비용 정산의무】 을은 소송비용을 개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며 인지대, 송달료 반환계좌는 갑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 : 안 산 시

대표자 시장 〇〇〇 (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을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〇〇〇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〇〇로 〇〇, 〇층(서초동, 〇〇빌딩)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명 : ○○○○ 》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 건 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구분		연월일	회시내용	

※ 자문구분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 형식은 가급적 문서(서면)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정부 법무공단 및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p> <p>② <u>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연임할 수 있다.</p> <p>③ <u>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u>-----</p> <p>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7명 이내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性)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u> 법무법인을 포함하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u></p>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 가. 불변기일 경과
 -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
 -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업무 등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 요청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는 등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 한다) 수행 중 상대방 소송을 수입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비위 행위가 발견된 경우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의 위임 또는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 제2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
2.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3. 계약서, 협약서 등의 자문 또는 시정 중요사안의 자문 등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과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의2(형사소송 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입건되어 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의 죄가안됨 결정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선임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별표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선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입)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 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 고발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각하, 죄가안됨 결정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2. 공소제기 되어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상정은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안건의 상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및 자문--- 심의안건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중요소송 또는 중요자문(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 ---.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 설치 반대
에 대한 사항
2. --- 10억 원 -----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문 및 소송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 (생략)

----- 공사
에 관한 사항

3. -----

----- 사항

4. -----

-----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 등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1. 착수금 : 2천만 원 이하
- 2. 승소사례금 : 3천만 원 이하
- 3. 중요자문 : 3백만 원 이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송소사료금	
민사소송	1. 신청 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이하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50	· 청구서
	2. 본안 사건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정(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금액 * 단, 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 원판송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 60퍼센트이상 송소할 경우 착수 금에 송소비용을 곱한 금액 · 피해의 성립, 인과, 소취하(상방 위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단, 조전부 취하는 제외)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서 유
	3. 환송 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 분의 50 이하	상 동	상 동
행정소송	1. 신청 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과 동	· 청구서
	2. 본안 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서 유
	3. 환송 심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상 동
형사소송	1. 입건 이후 제1심 까지	1,000만원	· 위가헌된 결정 · 형의없음 결정 ·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1,000만원	· 청구서 · 위경은 · 판결확정증명원 중 해당서류
	2. 항소 심	500만원		
	3. 상고 심	500만원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송소사료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
가 타 소 송 비 용	·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정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 공무원예비규칙(대통령령) 중 "급 공무 위해장액" · 기타비용 : 실액(단, 검정비, 감정비 소송대리인 수행 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청구서 · 인지보통 증명서 · 검정비, 감정비 등 납부명령 사본 각 1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송소사료금	
민사소송	신청 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	·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50	· 청구서
	본안 사건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 단, 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 원판송소 : 착수금의 100분의 150 · 60%이상 송소(피해의 성립, 조정결정의 취지가 60%이상 송소인 경우 포함) : 착수금에 송소비용을 곱한 금액 · 청구의 포기, 인과, 소취하 (상방위하를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단,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전부 취하는 지급제외)	1. 착수금 청구서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송소사료금 청구 서 · 신청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환송 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	상 동	상 동
행정소송	신청 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본안 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환송 심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청구시 구비서류
가 타 소 송 비 용	·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정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 「안산시 공무원예비규칙 제2조 제2호 해당하는 금액 · 기타비용 : 실액 · 송소사료금	· 청구서 · 검정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착수금과 송소사료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소송 상대방이 관여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송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 나. 이미 시효 상대로 정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 다. 시가 공동피고로 선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외의 피고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결정되는 소송
- 라.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송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선정시점은 소재기시점 원칙으로 하되,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시점 선정시점으로 한다. 이때, 그 지급액은 소송기시점에 따라 함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2]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복 수 금	송 소 사 책 금	
법 사 소 송	일건 이후 제1심까지	2,000만원 이하		· 청구액명수장 포함) · 결정문 · 사건과장문명원
	항소심	600만원 이하		
	상고심	600만원 이하		
	판결심	250만원 이하		
민사 소송	상급법	3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판결심	150만원 이하		

[별지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 분 종류	사건명	의뢰 년월일	의뢰내용	의 신 년월일	회신내용	비 고
소송사 건						
이의신 청 생성신 판						
법령해 석						
기 타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시의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재 지 :
기 관 명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귀하를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년○○월○○부터 ○○년○○월○○까 지 안산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법률고문위촉계약서

위임인(갑) : 안 산 시
대표자 시장 계종길

수임인(을) :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 3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갑이 자문 의뢰 또는 소송 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자료제공 등] 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지 체 없이 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수당]

- ① 갑은 을에게 자문수당으로서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 ② 자문수당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송비용 등]

- ① 갑이 을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1)[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 른 비용을 지급한다.
-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협의로서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③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해지] 양 당사자는 조항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통지의무]

- ① 용은 수입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과제·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 또는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 ② 용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론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및 비용 지급의 지체]

- ① 갑이 이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비용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용은 수입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업무의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용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용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 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전수입] 용은 이 계약 체결 이후 갑 이외의 자 등에게 갑의 이익과 상충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의 촉탁 또는 갑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사건 위임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 [소송비용 정산의무] 용은 소송비용을 계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며 인지도, 송달료 반환계획은 갑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용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1년 월 일

갑 : 안 산 시

대표자 서장 000 (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을 : 법무법인 스스

대표변호사 000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00로 00, 0층(서초동, 00빌딩)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연호사명 : ○○○ 》

연월일	자문요청인 및 소관부서 명					자문 사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 부 서 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 문 내 容		연월일	피사내용	

* 자문구분 : 소송사건, 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학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자문
일시는 거급적 문서(서면)로 한다.